

# 조선시대 제주와 오키나와 交流史

진 영 일

(인문대 사학과)

## 〈차 례〉

1. 머리말
2. 제주도와 오키나와 약사(略史)
3. 兩地域의 표류인(漂流人)
4. 양지역을 통한 본 조선왕조의 對外政策
5. 제주 표류민의 琉球 情報資料(15, 18세기)
6. 맺음말

## 1. 머리말

제주도와 오키나와(沖繩) 사이에 직접적 교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것은 조선왕조 시대부터이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양측의 交流는 世祖 3년(1475)에 濟州人 12인이 바람을 만나 유구(琉球)에 표류한 데서, 純祖 32년(1832)에 제주에 漂着한 琉球國 3인이 북경을 거쳐 송환하였다는 데서 끝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25회의 濟州民과 오키나와민 사이에 있었던 교류를 기록하고 있는데<sup>1)</sup>, 그 기사들은 주로 漂流民과 그 송환 대책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제주도와 오키나와간의 「漂流民」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표류민 송환 문제가 조선과 오키나와간에 어떤 국제관계와 이념에 의하여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도 아울러 물어보려고

1) 김봉옥, 『제주통사』(제주문화, 1987, 118-119쪽).

余奉玉 編譯,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제주문화방송사 발행, 1986).

상기 두 책에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다. 전자는 유구와 제주도의 표류인에 관한 사료와 그 출처가 간략하게 열거되어 있어서 필자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 주었다. 후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제주도 관련 기사를 발췌하여 훌륭한 번역과 原文을 제시하여 주어서, 앞 책에 못지 않게 필자의 도움이 되었다. 재삼 김봉옥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다. 그리고 본고를 통하여 필자가 원하는 바는 濟州島가 絶海孤島<sup>2)</sup>가 아니었고, 濟州民이 어로(漁撈)라는 위험에 찬 生業에 종사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머나먼 異域까지 표류하고 있었으며, 거기서 견문한 바를 귀환 후에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그리고 이 보고자료가 조선왕조의 對外認識을 넓히는 데에 일정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견하여 조선왕조의 極南端 邊方に 위치해 보잘것없이 생각되었던 濟州島가 太平洋이란 거대한 「바다」 위에서는 해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가장 유리한 「첨단(尖端)」 지역이 될 수도 있었고, 제주인은 이런 측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 2. 濟州島와 琉球國의 略史

우선 본고 서술을 위하여 예비지식으로서 오키나와 역사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오키나와는 전통적으로 류큐(琉球)라는 독자성이 강한 海洋王國으로서 존립하여 왔으며, 오키나와라고 불린 것은 日本 明治政府가 琉球藩을 강제로 폐지하고 오키나와현(충승현: 沖繩縣)을 설치하여 중앙정부의 직접 관할한 아래에 둔 이래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1879). 따라서 앞으로 본고에서는 오키나와의 유서 깊고 역사적인 이름인 「유구(琉球)」를 사용하겠다.

2) 흔히 우리가 제주도를 언급할 때 「絶海孤島」 운운하는데, 이런 관용구는 본도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잘못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아래에 제시된 정진술의 연구논문에 의하면, 日本 對馬島를 포함한 한국연안 도서(島嶼)는 울릉도를 제외하고서는 육지에서 모두 항해자가 눈(肉眼)으로 육지를 볼 수 있는 거리, 즉 視認距離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박의 항해에 미치는 다른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울릉도 이외의 모든 섬들에 渡航이 沿岸航法에 의하여 先史時代부터 현재까지 가능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필자는 제주도가 선사시대부터 육지와 고립되어 있었던 絶海孤島가 아니었으며, 상당한 모험심과 더불어 필요성만 느낀다면, 서로 왕래가 가능한 한국 남해안에서 가장 큰 大島였음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다음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鄭鎮述, 「韓國先史時代 海上移動에 관한 研究」(濟州島史研究會編, 『濟州島史研究』 2, 1992), 160 쪽.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濟州島史研究』 3, 1994), 12-13 쪽.

유구에는 오랫동안 신석기 시대가 계속되었다(紀元後 12~13세기). 그러다가 14세기 중엽에 琉球本島에 中山·北山·山南의 세 국가들이 성립하였다(「三山」時代). 이 三山은 제각기 중국의 명에게 朝貢하여 독자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다가 15세기 초에 본도 동남부 首長이었던 쇼하시(尙巴志)가 슈리(首里)에 통일 정권을 세웠으나(1429), 그러나 곧 카나마루(金丸)란 자가 쇼하시를 제거하고 第二尙氏王朝를 열었다(第二尙氏王朝, 1470-1879). 그 후에 사쓰마번(薩摩藩) 시마쯔씨(島津氏)가 유구를 침공하여 복종시켰다(1609). 그래서 정치상으로 유구는 사쓰마번의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왕조가 明治政府에 의하여 폐번치현(廢藩置縣)되어 없어질 때까지 19代 409년 동안 그 자립성을 잃지 않고, 유구의 여러 섬들에 군림하였다.

16세기이래, 首里를 중심으로 한 琉球國은 金, 황금 장식품, 銅, 유황(硫黃), 馬, 土産布 등을 중요한 수출품으로 하면서, 그리고 중국, 동남 아시아와 일본 등을 연결하는 中繼貿易地로서 일대 海洋王國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sup>3)</sup>.

濟州島의 경우는 5세기 말경부터 百濟, 수(隋), 唐, 日本 등과 더불어 무역과 국제 관계를 가졌던 탐라국(耽羅國)이란 존재가 역사상에 나타난다. 이 탐라국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 계층의 분화, 무역과 잉여축적, 首長이라는 정치적 지배자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보아 나라[國]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실재였다<sup>4)</sup>. 탐라국은 고려 肅宗(10년, 1105)이 「郡」으로 개편하면서 그 독자성을 잃었다고 하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고, 12세기 중엽, 의종대(毅宗代: 1146-1170)에 가서야 外官, 곧 중앙 관리가 가끔 여기에 파견된 것에 불과하였다 한다<sup>5)</sup>. 그러므로 제주도가 본토 중앙정부

3) 오키나와 역사 개설에는 다음과 같은 책들을 참조하였다. 新里惠二·田港朝昭·金城正篤, 「沖繩縣の歴史」(山川出版社, 1989); 新里惠二, 「沖繩史を考ふる」(勁草出版社, 1978); 虎頭民雄, 「沖繩縣(琉球)史」(「郷土史大系」熊本·宮崎·鹿兒島·沖繩編), 보문관출판, 1867).

그리고 양지역의 역사를 개괄한 논고로는 秦榮一, 「濟州島·沖繩 地域史에 관한 比較史 試論」(「耽羅文化」1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이 있다.

4) 秦榮一, 「古代耽羅의 交易과 國 形成考」(「濟州島史研究」3, 濟州島史研究會, 1994).

5) 秦榮一, 「高麗前期 耽羅國 研究」(「耽羅文化」16, 濟州大學校耽羅文化研究所).

에 의해 행정적으로 직접 지배되기 시작한 것은 屋主와 王子라는 독자적인 칭호가 사라지고, 左右都知管이 설치된 때부터 였다고 할 수 있겠다(朝鮮 太宗 2년, 1402). 그리고 제주도에 대한 조선왕조의 중앙지배가 관철된 것은 世宗 27년(1445)에 左右都知管制마저도 폐지된 이후의 일이었다.

그후에 본도 인구가 世宗代(1419-1450)에 급격히 증가되고, 島民이 內地 북부지역으로 대거 이주하였다. 그런데 이런 移民이 오히려 본도 거주주민을 대량 감소시키자, 거꾸로 本島人의 出島를 금지시키면서 아울러 內地人과 혼인조차도 금지시키는 「出島禁令」이 國法으로 내려졌다(仁祖 7년, 1629). 따라서 제주민은 조선말까지 2세기 동안 이 작은 섬 속에 봉쇄되었다. 이 禁令은 인간이동을 금지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제주민을 외부에서 도입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경제, 기술 등의 흐름을 차단시켜서 본도를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가 되도록 하여, 말이나 기르고 땅이나 파는 우둔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漂流」漁民이라는 주변 백성이 해외를 견문하여 오히려 제주민을 섬 속에 봉쇄한 조선조 관리들에게 해외의 정보와 지식을 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자 세상도 바뀌어져서, 이런 「海外」에서 도래하는 세력과 이들의 기술과 문물을 재빨리 학습한 日本이 朝鮮國을 멸망시키고 있었다. 필자는 여기에서 역사의 역설을 느끼며, 아울러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것도 본고가 목적하는 바의 하나이다.

### 3. 제주·유구의 漂流人

역사서에 양 지역의 표류인에 관계된 기사는 조선 초기에 처음 등장한다. 그것을 年度 별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세조 3년(1475) 7월 14일(이하, 세조 3-7-14, 1475식으로 표기한다) : 유구국 使者 倭僧道安 등의 15인이 와서 土産物을 바쳤다. 이에 앞서 濟州人 한금광 등이 바람을 만나 琉球에 표류하였다. 이때 유구국왕은 한금광 등을 道安으로 하여금 송환하도록 하

였다(金奉玉 編譯, 『朝鮮王朝實錄中 耽羅錄』, 제주문화방송사, 1986, 159 쪽. 이하에서 본고의 사료는 이 책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 세조 4-2-26, 1458 : 琉球國王 使者 오라사야문(吾羅沙也文)이 본국 표류인을 데리고 浦口에 도착하였다(同書 160 쪽).

\* 세조 7-6-8, 1461 : 羅州 船軍 梁成 등의 10인이 제주에서 출발하였는데, 태풍을 만나 琉球國에 표류하였다. 琉球國 使臣 僧德源이 양성 등의 8명을 데리고 돌아왔다(同書 161 쪽).

\* 성종 10-6-10, 1479 : 성종 8년(1477) 2월에 進上品 감자(柑子, 홍귤)을 가지고 본도를 출발하였다가 풍랑을 만나 유구국에 표류하였다. 이들은 윤이시마(閔伊是麼), 소내시마(所乃是麼) 등을 거쳐서 최후에 유구국에 도착하였다. 이들이 나중에 조선에 소환되었는데 거기서 유구국의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여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당시 유구 역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 해 6월 20일, 그들 중의 3인이 제주도에 송환되었다(同書 191-202 쪽).

\* 성종 10-6-22, 1479 : 琉球國王 尙德이 사신을 보내고 예물을 가져왔다. 사신은 조선 측에 대장경(大藏經) 1部, 약간의 면주(綿紬)와 목면(木棉)을 구하였다(同書 202 쪽).

\* 성종 10-6-26, 1479 : 국왕은 경희루에서 유구국 사신 上官 新時羅 등에게 연회를 베풀어 표류인들을 돌려 보내준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였다(同書 203 쪽).

\* 성종 10-7-27, 1479 : 유구국 사신이 귀국 차에 올랐다. 국왕은 대장경이 없어서 붙여 보내지 못하는 유감을 표하고, 그리고 유구국이 요청한 물품에 덧붙여서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적포(白細苧布) 10필, 人蔘, 청밀(淸蜜), 松子, 虎皮, 표피(豹皮) 등의 조선 특산물을 추가로 송부하였다(同書 203쪽).

\* 연산군 3-10-14, 1496 : 유구국 10인이 제주에 표착(漂着)하였다. 그들은 태풍을 만나 제주에 표류했다고 하는데, 그 언어는 왜어(倭語)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였다(同書 241-242 쪽).

\* 중종 25-8-9, 1530 : 濟州牧使가 여기서 잡힌 사람들이 왜적(倭賊)이 아니고 琉球國人이라고 아뢰었다. 국왕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니(此亦隣國之人) 의복과 음식 등을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속히 송환하도록 傳敎하였다(同書 297 쪽).

\* 중종 25-10-1, 1530 : 유구국인 7인이 표류해 왔다. 倭漢學通事가 그들의 말을 해득하지 못하였다. 국왕은 일기가 점차 추어 지니 두터운 옷과 입자(笠子) 등을 내어주고 대접을 소홀리 하지 말라고 傳旨하였다(同書 297-298 쪽).

\* 중종 25-10-2 : 琉球語를 아는 倭人을 구하여 對馬島를 통하여 유구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同書 298 쪽).

\* 중종 25-10-3 : 예조에서는 “왜인에게 물어보니, 유구국인이 일본과는 멀리 살아서 그 말을 모르겠다”고 한다고 임금에게 아뢰면서, 아울러 유구국인을 중국으로 이송시켜 본국으로 전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중국으로 보내도 만약 본국인을 못 만나면 다시 데리고 돌아와야 하니 불쌍하니, 왜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해당 관서에 명하고 있었다(同書 299 쪽).

\* 중종 25-10-19 : 예조에서 “유구국인은 자기들을 왜인이 데려간다는 말을 듣자 모두 통곡하였다”고 함니다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표류인이 왜인에게 입을 폐단을 알고서 불쌍하기 그지 없었다고 하였다(同書 300 쪽).

\* 광해군 4-2-10, 1612 : 司憲府에서 濟州 前牧使 이기빈(李箕賓)과 前判官 文希賢의 사건을 아뢰었다. 南京人과 安南商人이 貨貝를 싣고 제주도에서 표류해 왔다. 상기한 두 관리는 처음에는 잘 접대하다가 재물을 탐내어 모두 죽이고 재화를 다 취한 다음에 그 배까지도 불태웠다. 나중에는 倭賊을 잡았다고 거짓 軍功을 列記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들은 공로와 재물을 탐내어 국제간의 義理를 생각하지 않고 임금을 속인 자들이었다(同書 393 쪽).

\* 광해군 4-4-15, 1612 : 이기빈과 문희현이 표류한 唐船을 겁략하여 보화를 취한 죄로 하옥하고 국문 하였다(同書 394 쪽).

\* 광해군 5-7-27, 1613 : 임금은 義禁府의 보고를 받아 이기빈을 北靑으로 문희현을 北道로 유배하였다. 判官 문희현은 商人漂船

을 만났는데, 거기에는 中國·倭人·琉球의 3國人이 같이 타고 있었고, 또한 많은 재화를 몰래 싣고 있었다. 이에 문희현은 간사한 말로 이기빈을 움직여 그 배를 습격하여 없애고 그 재화를 나누어 가졌다.

상선에는 나이 25~26세쯤 되는 琉球國 사신이 타고 있었는데, 文辭에 재능이 있어 이기빈에게 매우 悲苦한 글을 써보내었다(同書 395 쪽).

\* 인조 3-1-8, 1625 : 함경북도 절도사 이기빈이 죽었다. 琉球國 王子가 보패(寶貝)를 가득 싣고 漂風으로 인하여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이기빈과 문희현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寶貨를 몰수하였다. 왕자는 그 사신의 임무를 말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조용히 해를 당하였다. 이기빈은 仁祖反正 후에 광해군에게 뇌물을 주어 오히려 北門의 중임을 맡았다(同書 414 쪽).

\* 영조 17-2-14, 1714 : 濟州民 21명이 표류하다가 유구국에 도착하였다. 1년 동안 살다가 福建省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지내다가 4년만에 귀환하였다. 이 도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죽었다(同書 524 쪽).

\* 정조 14-7-20, 1720 : 濟州牧에 異國船이 표류하였다. 그 배는 전후가 높으며 또 거기에 해와 달을 그렸놓고 있었다. 배 안에는 船主를 위시하여 12인이 있었다. 이들은 琉球人으로 中山王都 내의 나패부(那霸府) 西村에 산다고 하였다. 宮古島에서 年貢을 운반하다가 6월 13일에 바람을 만나 同月 20일에 제주 貴日浦에 상륙하였다. 귀국을 간청하므로 제주목사 이철모(李喆謨)가 급히 알렸다(同書 600 쪽).

\* 정조 18-9-11, 1794 : 제주목사 심낙수(沈樂洙)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즉 유구국 표류인에게 실정을 물으니 반드시 陸路로 福州로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니 괴이하다. 그들은 절대로 水路로는 안된다고 한다. 우리 國法이 허용하지 않음을 설득하였으나 심히 거부하였다. 그들이 타고 온 작은 배를 고쳐서 승선시켜서 생사를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임금은 배에 실어 보냈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북경에 특별

히 사신을 보내서 그들을 들여보내서 福州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交隣國으로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義에도 합당할 듯하다고 下教하였다(似合交隣國重人命之義). 이때 제주통사 李益靑이 일찍이 표류해 왔던 유구인에게 말을 배워서 그 실정을 물을 수 있었다. 이 표류인은 유구국 八重山島 新川村 사람인데 公事로 여나국도(與那國島)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에 표착하였다 한다. 같이 배를 탄 사람은 11인이었으나 7인은 표류한지 한달 남짓만에 아사하고, 4인은 살아서 이 곳에 도착하고, 또 한사람이 병사하여 지금은 3명만이 있다. 이하 유구국의 일부 실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 유구인들이 서울에 도착하자, 임금은 하교하여 承旨를 보내서 위로하게 하고 식량과 의복을 충분하게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 정조 21-윤6-7, 1797: 유구국 7인이 제주 大靜縣에 표착하였는데, 水路로 송환하였다. 그들은 나패(那霸: 나하라고 읽는다)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나패는 그 나라의 府名이고 王都와의 거리가 10리라 하였다.

\* 순조 7-8-10, 1807 : 앞서 순조 원년(1801) 제주 唐浦에 大船 하나가 지나가다가 5인을 내려놓고 가버렸다. 지금은 3인이 남아 있는데, 그들은 동남방을 가리키며 「幕可外」라고 한다. 마침 유구국 표류인에게 실정을 물을 때 저들을 보이니, 유구인중 宮平이란 자가 말하기를 순조 2년(1802)에 중국인 32명과 조선인 6명이 유구국에 표류하였다 한다. 유구국은 양국 표류민을 중국 복건성으로 호송하였는데 태풍을 만나 여송국(呂宋國, 필리핀)에 표착하였다. 그가 이 사람들을 보니 呂宋國人인 것 같다. 또 「幕可外」라는 말은 여송국의 官품이라 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유구인들에게 귀국할 때 같이 동승하여 가기를 권하니, 그들은 이것을 번번이 거절하였고 그들끼리 돌아가 버렸다. 순조 9년(1809) 6월 26일에 임금은 여송국의 漂到人을 중국 심양(瀋陽)으로 보내서 본국으로 송환하게 하였다(同書 648-649 쪽).

\* 순조 32-9-24, 1832 : 대정현에 표착한 琉球國 那霸人 3인을 陸路로써 北京에 호송하였다(同書原文, 206 쪽上).

## 4. 兩地域을 통해 본 조선왕조의 對外政策

### 4.1 조선의 「事大交隣」 政策

제주도에만 유구의 사절과 표류민이 왔던 것이 아니었다. 조선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제주와 유구민의 왕래는 그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여기서는 그 사정을 간단하게 약속하겠다.

朝鮮國 全時期가 아니라 우선 초기만 보더라도, 태조 원년(1392) 8월 中山王 찰도(察度)가 사신을 보낸 이래 중종 19년(1524)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 동안 48 차례에 달했다. 이 횟수는 평균해서 3년에 한 번 꼴로 상당히 활발한 편이었다. 내빙회수(來聘回數)는 세조대와 성종대가 가장 많고, 빈도수도 세조대가 거의 1년에 한 번 꼴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대마도나九州 등지의 일본상인들이 유구사절로 위장하여 온 가짜 사신[僞使]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sup>6)</sup>.

이 시기 유구사신의 내빙(來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7)</sup>. 즉 조선전기엔 유구에서 조선에 보낸 사절이 48회인데 조선 측이 사절을 보낸 것은 3회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도 세종대 이후에는 없다. 그 중에서도 태종 16년(1416) 琉球通信官으로 이예(李藝)를 파견한 것이 유일하게 격식을 차린 사례이고, 나머지 2회는 모두 通事를 파견하였기 때문에 정식사절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sup>8)</sup>.

그런데 조선과 유구의 국제 관계는 조선의 대외관계를 규정한 「사대교린(事大交隣)」이라는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사대교린정책은 15세기 전반기 세종대에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조공(朝貢)을 근간으로 하여 중국을 上國, 그 주위의

6) 河宇鳳, 「II.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5. 유구와의 관계」,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5, 410-425 쪽 참조.

7) 孫承喆, 「朝鮮前期 對琉球 交隣體制的 構造와 性格」, 『西嶽趙恒來教授紀念韓國史學論叢』, 亞細亞出版社, 1992, 226-228쪽 참조.

8) 하우봉, 앞 논문, 413쪽.

국가를 朝貢國으로 하고, 서로 상하관계를 결성하여 국가들의 정권을 서로 보장하는 국제체제였다. 세종은 이 체제에 의거하여 조선이 중국의 天子에게 事大의 儀禮로서 조공을 행하고, 북방의 여진족과 남방의 일본·유구에 대하여는 「交隣」의 예의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조선을 중심으로 이중적인 상하관계를 수립하고, 그 외교적 주역을 조선이 담당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세종대에 중국·일본·만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조선이 주도하게 되었다 한다<sup>9)</sup>.

상술한 조선의 사대교린정책은 제주도와 유구의 표류민 송환사정을 둘러싸고 잘 나타난다. 우선 유구와 조선은 자기 영역에 표착한 표류민을 될 수 있는 한 인도적 조치를 다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이것을 잘 드러내 주는 예는 중종 25년에 유구인 7인이 표류해 왔을 때에 취한 조선국왕의 조치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우선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들과 언어소통을 위하여 여러 방면으로 그 언어 해독자를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래서 한 倭人을 찾아내자, 對馬島에 通書하여 왜인에게 맡겨서 유구국으로 보내도록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예조에서는 대마도에 공문서를 보내어 왜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하면 그간에 속이는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표류인을 일단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길을 찾아 본국으로 보낼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도 조선 당국은 그 유구 표류민을 본국에 송환시키려고 국가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sup>10)</sup>.

우리는 위와 같은 朝鮮王廷의 태도를 취한 원인으로서 두 가지의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 첫째로, 외국인에 관한 이런 조치는 朝鮮朝가 표방하는 王道政治를 구현한 것이었다. 중종은 다음 같이 말을 하고 있다. 즉 지금 온 표류인은 내가 서로 살리는 마음(互生之心)으로 어찌 만전을 기하여 보내고자 하지 않겠느냐. 단지 중원으로 入送하고 유구국 사신을 만나면 보낼 수 있다. 만약 그 본국인을 만나지 못하면 버리고 올 수가 없으니, 형편이 데리고 돌아와야

9) 金九鎮, 「II.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3. 여진과의 관계」, 『한국사』 22, 330 쪽.

10) 중종 25-10-1, 중종 25-10-2, 중종 25-10-3, 중종 25-10-19의 記事 참조.

한다. 이로서 헤아리면 또한 어렵지 않겠느냐. 정부의 말이 심히 합당하다. 해당 관서로 하여금 마련하여 왜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었다<sup>11)</sup>.

시대가 상당히 흘러간 다음에도 조선국의 이런 정신에는 변함이 없었다. 정조는 나패부(那霸府) 西村에 산다는 琉球人 12인이 표류해 오자, 그들을 중국에 가는 사신을 따라서 北京으로 보내고, 거기서 福州를 거쳐서 본국으로 가도록 조치를 하였다. 이때 承文院에서 “都提調 洪樂性은 유구인이 육로로 환송하는 것을 원하니 聖敎가 마땅하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好生之德과 먼곳을 긍휼히 여기시는 聖念을 이루다 흠앙(欽仰)할 수가 없습니다. 使節 편에 따라 부치는 것은 더욱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임금에게 아뢰고 있었다<sup>12)</sup>. 유구 표류민에 대한 이런 인도적 처리에는 조선왕조가 그 정책 기초를 인간을 폭력이 아닌 「好生之德」하는 德治에 의해야 한다는 「王道政治」를 그 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둘째로, 조선의 「事大交隣」 정책에서 차지하는 琉球國의 位相이 문제가 된다. 유구국 中山王 察度는 명에게 朝貢한 이래로 17회에 달하는 進貢使를 파견한 明의 책봉국(冊封國)이었다<sup>13)</sup>. 따라서 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兩國은 다같이 명의 책봉을 받았으므로 서로 「敵禮國」(이때 敵禮라는 것은 서로 대등한 예를 갖고 대하는 對等國이란 의미이다)되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백성은 자기나라의 백성에 준하여 대우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 곧 자기 백성보다 상대방 백성을 소홀하게 처우하면 바로 조선의 외교정책이 토대가 되는 「사대교린」 원칙 무너지게 된다. 조선과 유구국은 당시 동아시아의 국제적 관계가 된 이런 외교정책에 따라서 표류민에 대하여 될 수 있는 한 잘 처우하고 귀국시켜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유구국에서도 자기 영역에 표류해 온 제주민을 우대하여 송환하

11) 중종 25-10-3.

12) 정조 18-9-11.

13) 李元淳, 「朝鮮前期 朝鮮廷臣의 琉球 認識」, 『裴鍾茂總長退任紀念史學論叢』, 배종호총장 퇴임기념 사학논총 간행위원회, 1994, 171쪽.

고 있었다. 유구국 使者 倭僧 道安 등의 15인이 표류민 韓金光 등의 12인을 데리고 조선에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있었다<sup>14)</sup>.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다음 두 경우가 더 보인다. 유구국 사신 僧德原이 표류민 제주에서 출발하여 태풍을 만나 표류했던 船軍 梁成 등의 8명을 데리고 조선에 왔다<sup>15)</sup>. 또 제주 표류민 김비의 등의 3인이 琉球國에서 귀환하였다<sup>16)</sup>. 유구국도 조공무역의 기본 정신이 되는 외교정책으로서 「사대교린」의 원칙에 충실하게 표류민을 후대하고, 그래서 조선에 송환하고 있었다.

『經國大典』에도 琉球國王使에 대해서는 日本國王使와 같은 대우로서 3품 朝官을 보내어 迎送하도록 하였고, 유구국사절이 귀국할 때 해상에서 필요한 過海糧의 지급량도 일본국왕사와 동등하게 하도록 규정하였다<sup>17)</sup>.

실제로 태조 원년(1392) 9월 琉球國使가 여진의 使臣과 함께 조회에 참여하였는데, 유구사신을 東班 5품하에, 여진사신을 西班 4품하에 배열하도록 하였다. 이것을 보면 『경국대전』의 조항은 상기한 전통을 이어서 받아서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된다<sup>18)</sup>.

정조 14년 7월에 유구국 선박이 표류하였다. 그 배는 전후가 높으며 앞에는 해를 뒤에는 달을 그렸다. 양옆에는 난간을 만들고 난간밖에는 太極이 그려져 있었다. 배에는 12인 타고 있었다. 제주목사는 그들을 서울로 송환하였는데, 임금은 다음과 같이 下教하고 있었다. 즉 유구인 에게는 옛날 우리 나라에서 벼슬을 주고 특별히 總管을 주어서 보검을 채비하여 近侍하게 한 것이 2백년 전의 일에 불과하다. 지금 표류인을 회유하는데 뜻이 있으니 별도로 高懸(顯恤)함을 보여주는 것이 義에 맞는다. 승지 한 사람을 住接館에서 기다리게 하고 京畿營에 가서 道臣과 더불어 위문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표류민에 대한 영접도 직접 국왕이 비서관인 承旨(正3品 堂上官)를 보내서 지방장관과 더불어 그 대우에 소홀함이 없게 하도

14) 세조 3-7-14.

15) 세조 7-6-8.

16) 성종 10-6-10.

17) 하우봉, 앞 논문, 416 쪽.

18) 하우봉, 앞 논문 416 쪽.

록 명령하고 있었다<sup>19)</sup>.

양국간의 관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인정에 넘치고 아름다운 일들로만 가득한 것도 아니었다. 관리들의 탐욕이 유구인을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는 참혹한 사건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光海君代에 濟州牧使 이기빈(李箕賓)과 判官 文希賢이란 자들이 있었는데(濟州牧使와 判官은 제주인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각각 正3品, 從5品の 高官들이었다), 그들은 제주도에 재화를 가득 실은 상선이 표류해 온 것을 보자, 서로 작당하여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 재물을 분배해 가졌다. 그 배에는 中國·倭人·琉球 3국인이 승선해 있었는데, 그 중에 나이가 25~26세나 되는 琉球國 使臣은 文辭에 능하여 죽기 전에 매우 비장한 글을 남겼다<sup>20)</sup>. 물론 이들은 부정한 일이 발각되어 문책을 받고 北道로 귀양살이를 갔다<sup>21)</sup>. 그러나 이기빈은 후에 광해군에게 많은 財貨를 헌납하여, 오히려 인조반정 후에는 함경북도 절도사라는 중임을 맡았다<sup>22)</sup>.

## 4.2 양국간의 교역

조선과 유구국 사이의 무역은 양국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인 朝貢關係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졌다. 조공관계란 동아시아 세계의 정치적 관계를 구조 짓는 것이 책봉체제(冊封體制)라고 한다면, 그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실천하는 행위였다고 하겠다. 원래 朝貢이란 중국 황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주위의 민족이나 국가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면, 중국 황제는 회사품(回賜品) 또는 상사품(賞賜品)을 내려주는 경제적 행위를 그 핵심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주위의 국가들은 당시 최대 부국인 중국과 더불어 조공관계의 수립해서 필수물자와 선진문물을 도입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sup>23)</sup>.

양국간의 외교에서 경제적 측면이 차지하는 비중은 컸다. 제주도

19) 정조 18-9-11.

20) 광해군 4-2-10, 광해군 4-4-15, 광해군 5-7-27, 인조 3-1-8.

21) 광해군 5-7-27.

22) 인조 3-1-8.

23) 박원호, 「Ⅱ.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2. 명과의 관계」, 『한국사』 22, 302 쪽.

와 유구국의 표류민에 대한 세심한 대우와 조치는 王道政治를 구현한다는 관념에서 원래 유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양국관계에서 책봉체제와 조공무역을 유지하려는 현실적 배려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성종 10년에 琉球國王 尙德이 사신과 더불어 예물을 보내왔는데, 그는 조선 측에 大藏經 一部와 약간의 면주(綿紬)와 목면(木棉)을 구하였다<sup>24)</sup>. 조선국왕은 이미 여러 곳에서 구하여 갔기 때문에 대장경을 못 보내는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고, 유구국의 요청한 물품에 덧붙여서 백세면주(白細綿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인삼(人蔘), 청밀(淸蜜), 송자(松子), 호피(虎皮), 표피(豹皮) 등의 여러 가지 특산물을 답례로서 송부하였다. 이렇게 제주·유구의 표류민 송환을 둘러싸고 양국간에는 조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제주표류민은 이런 면에서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의 조공무역에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동아시아 사이의 평화유지에 일조 하였다 하겠다.

여기서 유구국이 대장경을 조선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1429년 유구를 통일한 尙氏 琉球王國은 중국의 정치체도를 수입함과 동시에 통일왕조의 사상적 구심점으로 삼고자 불교를 적극적 장려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유구의 불교는 흥융하였고, 圓覺寺를 비롯한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다. 이들에게 조선의 대장경 등 불교문화재는 큰 매력이었다. 세종대이래 유구사신들은 조선의 불교문화를 흠모하여 주길 요청하였고, 이것이 對朝鮮 通交의 주요 목적이 되기도 하였다<sup>25)</sup>.

## 5. 제주 표류민의 琉球 情報資料(15, 18세기)

성종 10년(1479)에 濟州漂流人 金非衣, 姜茂, 李正 등 3인이 유구국에서 귀환하였다. 그들이 경유한 섬들의 풍속이 심히 기이하였기에 임금은 弘文館에 명하여 그 견문을 기록하게 하였다. 그들은 성종 8년(1477) 2월 1일에 진상할 감자(柑子: 귤)를 가지고 출발

24) 성종 10-6-22.

25) 하우봉, 앞 논문 421 쪽.

하였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한 자들이었다.

\* 그들은 차례로 윤이시마(閏伊是麼), 소내시마(所內是麼),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麼), 포라이시마(捕刺伊是麼), 홀윤시마(欸尹是麼), 타라마시마(他羅馬是麼), 이라부시마(伊羅夫是麼), 먹고시마(覓高是麼)를 경유한 후에 최후로 琉球國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15세기 후반의 유구국의 풍광을 견문하고 있었다.

1) 財物 錢布 魚鹽을 보관하는 倉庫가 있었다.

2) 琉球人은 표류민을 厚待하고 있었다.

3) 國王 母의 出遊 : 국왕은 칠련(漆輦: 옷칠한 수레)을 타고, 長劍과 弓矢를 든 백여 명의 軍士가 호위하였으며, 비단옷을 입고 겉에는 백저포(白苧袍)의 긴 옷을 입은 아름다운 부인 5, 6인이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 행렬에는 10여세 가량이 되는 小郎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왕이 죽고 대를 이은 임금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母后가 臨朝하고 있는데 小郎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국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4) 해안에서 왕궁에 이르는 거리가 10여 리인데, 국왕이 사는 매우 높은 殿閣이 있었다. 人家는 기와(瓦)로 덮기도 하나 판옥(板屋)이 매우 많았다.

5) 논과 밭은 서로 반반인데 밭이 조금 많았다. 논은 겨울에 파종하여 5월에 벼가 모두 익어서 수확을 마친다. 또 소로 이를 밟아서 다시 파종하며 7월에 이앙(移秧)하고 가을과 겨울 사이에 다시 수확한다. 밭은 작은 삼으로 일구어서 조를 심는데 역시 겨울에 처음 파종하고 5월에 수확하며 6월에 다시 파종하여 8월에는 처음으로 이삭을 드리우고 익어간다.

6) 표류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자, 通事가 국왕에게 주달하기를 '일본인은 성질이 나빠서 목숨을 보전할 수 없으므로 너희들을 江南으로 보내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들이 일본이 가까우므로 일본으로 갈 것을 청하자, 마침 일본인 패가대인(覇家臺人) 新伊四郎이 장사차 와서 있다가 표류민을 데리고 돌려보내기로 국왕에게 약속하였다.

7) 국왕의 하사품(下賜品) : 錢 1만5 文, 호초(胡椒) 1백5십斤, 청염포(靑染布) 3필, 당면포(唐綿布) 3필 등이 하사되었다.

8) 이들은 다른 백여 인과 더불어 큰 배 한 척에 타고 4주야(晝夜)를 항해하여 일본 사쓰마주(薩摩州)에 도착하였다.

9) 패가대(霸家臺)의 상황과 풍습 : 人家가 조밀함이 우리 나라의 都城과 같았다. 그 안에 市場이 있는 것도 우리 나라와 같았다. 그들은 小殿과 전쟁을 하고 있었다. 창 칼 小旗를 든 군사가 3~4만 명이나 되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 齒牙를 보고서 그 貴賤을 알아맞혔다. 대개 작위가 있는 자는 치아를 물들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마침내 염포(鹽浦)에 도착하였다. 울산군수(蔚山郡守)는 그들이 감투(甘套)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각각 입자(笠子: 갓)와 베(布) 한 필씩을 주어 옷을 만들어 입히고 서울로 올려보냈다. (『편역 탐라록』 191-202 쪽).

성종 10년(1477)은 琉球王國 尚眞王 1년에 해당되는 해이다. 이 보고자료는 유구역사를 연구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다<sup>26)</sup>. 그리고 유구국 역사를 개설서인 『沖繩縣의 歷史』(107-108 쪽)에는 이 자료에 의거해, 「산업의 발달」 항목에서 당시 유구의 농업과 그 기술수준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1477년(文明 9) 沖繩 最南端의 與那國島에 朝鮮 濟州島의 김배(金鬻) 등이 표착 하였다. 그 見聞錄은 표착한 곳인 與那國에 관하여 “오로지 쌀밥을 먹고, 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든가, “대장장이는 있지만 쟁기는 만들지 않고, 작은 가래를 사용하며, 12월에 소로 하여금 눈을 밟게 하고 씨를 뿌리고, 정월에 못자리를 심으면 4월에는 익는다. 만도(晩稻)는 5월에 베고, 벤 후에 싹이 나서 가을에 다시 수확한다. 거둬들인 벼는 묶어서 창고에 보관하고, 먹을 때에는 대나무 가지로써 이것을 훑어서 절구에 찧는다”고 하였다. 또 오키나와(沖繩本島: 충승본도)에 관하여서는 “눈은 겨울에 씨를 뿌리고, 5월에 벼가 익고, 수확이 끝나면, 다시 소에게 밟게 하고 다시 씨를

26) 新里惠二, 出港朝昭, 金城正篤 共著, 『沖繩縣の歴史』(山川出版社, 1989, 年表, 18 쪽). “朝鮮人이 八重山에 漂着하여 송환되었는데, 그 見聞記를 남겼다”라고 적어놓고 주목하고 있다.

뿌린다. 7월에 못자리를 옮기고 秋冬 사이에 수확한다. 밭은 작은 가래로써 갈고 조를 뿌린다”고 하였다. (중략) 農具는 작은 가래〔小鍤〕 이외에도 낫〔鎌〕이 있다고 하지만, 石鍤(석초: 돌 가래)·木製의 鍤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무렵에는 역시 鐵製品은 利器에 지나지 않으며, 농구로서는 일반적으로 보급되지 않았을 것이다.<sup>27)</sup>

이렇게 당시 유구국의 농업과 사회를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섬 출신이라는 제주 표류민의 호기심 어린 관심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으며, 비슷한 생활세계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공감의 전제되었기에 단순한 표류지 유구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찰이 가능했을 것이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관찰이 있는데, 3) 항목에 보이는 國王母의 행차에 관한 기사이다. 이런 사실도 유구국 역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 같다. 이쿠다 시게루(生田 滋)는 이 사료를 토대로 하여 당시 유구 왕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成化 13년(1477)에 유구유키도(琉球尤伊島〔與那國島〕)에 표착한 조선 표류민은 충승본도(沖繩本島)에 연행되었다. 일행은 “하루는 國王이 황금으로 장식한 대련(大輦〔큰 수레〕)에 타고 있었는데, 전후에는 갑옷으로 무장한 무사들이 호위하였는데, 그 儀仗이 매우 성대하였다. 또 10여 세의 남자 애가 말을 타고 수행하였다. 그 衛兵도 성대하였다. 그들은 官府에 이르렀다. 우리들이 절하고 길옆에서 통곡하며 애걸하였다. 국왕은 수레를 멈추고, 우리의 사정을 묻고 술을 내리고 별안간 돌아가 버렸다.” 우리말을 아는 日本通事가 와서 우리의 처소를 물으면서 말하기를 “국왕이 서거하고 女王이 나라를 통치한다. 수레에 타고 있는 자는 여왕이다. 말 타고 있는 어린애가 나라의 왕자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國王과 女王, 즉 尙圓의 妃로서 尙眞王의 어머니인 「오기야까(おぎやか)」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尙圓王이 죽은 후에 「오기야까」가 섭정(攝政)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원왕 사후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혼란도 그 배후에는 「오기야까」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도 좋다. (중략) 이렇게 琉球 中山王府에서는 국왕

아래에 王弟가 정치, 군사, 무역 등의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 왕위계승도 기본적으로는 국왕에서 형제에게 잇는 것이 기본적인 습관이었다고 생각된다. 「오기야까」가 자기 아들인 尙眞을 왕위에 올린 것은 이 전통적 습관에 대한 도전이다.<sup>28)</sup>

15세기 후반 제주 표류민이 보고한 자료가 5백년이나 된 후 오늘날 오키나와의 역사연구에 한 실마리를 던져 주고 있다.

이 표류민 이후, 313년이란 세월이 지난 정조 14년(1790)에 다시 中山王都 내의 那霸府에 사는 유구인 12명이 제주도에 표착하였다. 그리고 濟州通事 李益靑이란 자가 있었는데, 일찍이 유구 표류민을 통해서 그 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표류인에게 유구 실정을 묻고 問情記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고하였다<sup>29)</sup>.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표류인은 유구국 八重山島 新川村 사람인데 公事로 與那國島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제주에 漂到하였다. 여나국(與那國)은 島名으로서 국호는 아니다.

2) 같이 배를 탄 사람은 11인이었다. 7인은 표류한지 한달 남짓 만에 아사하고, 4인은 살아서 이 곳에 도착하였는데, 또 한 사람이 병사하여 지금은 3명만이 있다.

3) 한 사람만이 姓이 있고 10인은 성이 없다. 이것은 열 사람이 下賤한 까닭에 姓字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4) 新川村에서 中山王都까지 거리는 水路로 380리이고, 與那國島까지는 수로로 48리이다.

5) 머리에 쓰는 것은 본래 없다. 단지 상투를 틀어서 頂心에 비녀를 꽂는데 上人是 銀 비녀, 下人是 주석(錫) 비녀를 꽂는다.

6) 八重山島의 官長은 3인이 차례로 번(番)을 선다. 이들은 본국에서 정해지며, 파견되어 와서 3년이면 교체된다. 모두 사무라이(士)이다(問八重山島官長幾員 答在者三人 自本國定來 三年交替 頭三人 本島人死後代立 皆士也).

28) 生田滋, 「琉球王國論: 琉球古代史의 諸問題」, 比嘉政夫 編 「海洋文化論」, 1993, 336-337 쪽.

29) 景宗 18-9-11.

7) 벼는 청종이고, 보리 조 종자 콩종자는 10월에 부쳐서 다음 해에 비로소 수확한다.

이 18세기말에 작성된 問情記는 주로 풍속에 관한 것이어서, 저번 성종 10년(1477) 표류민의 유구 기사에 비하여 琉球國의 상황에 대하여 별로 중요한 정보자료를 전하지 못한 듯하여 오키나와 연구자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신자토 게이 지(新里惠二) 등이 공동 집필한 『沖繩縣の歴史』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오키나와 역사연구에서 시대구분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 시대구분이란 地域史이거나 一國史이거나 역사는 진보하고 있으며, 그 발달의 궤적은 여러 시대들로 단락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주로 마르크스 학자들이 중요시하는 역사이론으로써 古代 奴隸制, 中世 封建制, 近代 資本主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소위 世界史의 基本法則이라고 한다), 그리고 각 시대들은 역사가 반드시 밟아 거쳐야 하는 철칙(鐵則)이라 한다. 이에 표준 하여 仲原善忠은 오키나와 역사를 ① 原始社會(漁撈時代-3, 4세기), ② 古代社會(5-11세기), ③ 封建社會前期(12-15세기), ④ 封建社會(15-19세기), ⑤ 近代社會(19세기-현재)로 구분된다고 하였다<sup>30)</sup>.

그러나 신자토 게이 지(新里惠二)는 오키나와 역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봉건시대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봉건제의 본질적인 특징으로 하는 地方分權과 在地秩序를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在地 武裝集團, 즉 在地武士가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유구국의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士族(유카추)는 비무장 집단이었으며, 오로지 首里의 중앙집권력에 의존한 文人 관료집단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유구국 士族은 어디까지나 왕조권력에 의존하는 古代貴族이었으며, 봉건적 무사집단이 아니었다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독자적인 세력 근거, 곧 지방적 토대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 小地域의 세력가인 地頭의 토지는 세습지가 아니었으며, 또한 首里王廷의 지령에 따라 업무가 처리되어 在地民에 대하여 아무런 독자적인 自律權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들에게는 소위 봉건

30) 新里惠二, 『沖繩史を考ふる』, 勁草書房, 1978, 20 쪽.

영주의 불수불입권(不輸不入權)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地頭들은 首里王府의 위계서열(位階序列)에 따라 교체되었다 한다. 이렇게 유구역사에서는 首里王廷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봉건제도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 자취도 없었다<sup>31)</sup>.

남의 나라 지방사 문제에 기여들 학식이 전혀 없는 필자로서는 그간의 복잡한 논쟁의 경위는 모르지만, 정조 18년에 작성된 이익청의 問情記에는 “八重山島 長官은 3인이며 차례로 番을 선다. 이들은 본국에서 정해지며, 파견되어 와서 3년이면 교체된다. 모두 사무라이(士)이다”라고 그 섬 당사자의 말이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한 問情記 자료는 자율권을 행사하는 在地 武士의 존재는 없었고, 首里王府에 의하여 파견된 관리에 의하여 지방이 경영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하나의 방증(傍證)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만일 봉건제가 무장된 在地 武士들이 개인적인 복무 대가로 토지를 수여하는 지도자에 규합되는 군사적·정치적 제도를 기술하는 전문용어이며, 이것은 10-13세기 유럽상황에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의 결여, 정치권력의 지방단위로 이전, 家臣制度和 封土가 연결된 기마기사(騎馬騎士)가 지방영역을 통제하는 상부구조를 그 특징으로 하는 특수한 제도라고 한다면, 상술한 주장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이해된다<sup>32)</sup>.

## 6. 맺음말

이 글은 조선왕조시대에 제주도민과 유구민 사이에는 많지는 않지만 漂流民을 통하여 서로 교류하고 있다는 사례들을 『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내어 본 것이었다. 대략 지금까지 이 작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양지역 사이에 관한 역사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1) 濟州島에는 고려중기 의종대(1146-1170)에 중앙관리인 京官이 가끔씩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고려후기에는 상례화

31) 新里憲二, 앞 책, 39-44 쪽.

32) Peter Duus, *Feudalism in Japan*, Alfred A. Knopf, New York, 1976, pp. 3-14.

되기 시작하자 제주도는 5세기부터 그 독자성을 상실하고 中央王廷에 종속하여 갔다. 조선 世宗 27년(1445)에 좌우도총관(左右都摠管)이 폐지됨으로써 星主·王子라고 상징되었던 탐라국의 자율성은 단절되었다.

한편 琉球는 12, 13세기 때까지 신석기시대가 계속되다가 14세기 중엽에 中山·北山·山南이라는 三山이라는 3국이 성립하였다. 15세기이래 中山 尙氏王朝에 의해 통일되어, 중간에 薩摩藩(薩摩藩)에 의하여 침공 당하여 정치적 간섭을 받았는다는 사정은 있었으나, 琉球王國은 明治政府에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직속될 때까지(1879)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 독자적인 海上王國으로서 그 실체를 잃지 않고 있었다.

(2) 표류민을 중심으로 한에는 제주도와 유구간의 교류는 『조선왕조실록』에 세조 3년부터 시작되어 世祖代 3회, 성종대 5회, 연산군대 1회, 중종대 6회, 광해군대 2회, 인조대 1회, 영조대 1회, 정조대 3회, 순조대 5회 정도로 언급되어 있다. 단 이런 回數는 같은 事案에 대한 여러 조치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자의 교류 빈도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기본 주제는 주로 제주도에 표착한 유구 표류민과 유구에 표착한 제주 표류민의 본국송환에 관한 사항이었다.

(3) 조선국은 유구 표류민에 대하여 본국송환 절차와 대우문제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국왕이 대부분 이런 조치에 관여하고 있어 그 관심도의 정도를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국의 대외정책이 「事大交隣」이란 國家政策에 준거하여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근본이념은 明에 事大, 인근국에 대한 善隣友好에 입각하여 동아시아의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조선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심사원려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유구 표류민에 우대정책은 조선국의 이데올로기적 지주인 유교가 四海百姓을 폭력과 탐욕에 의하지 않고 善意와 도덕으로써 통치해야 한다는 「王道政治」의 구체적 표현이기도 하였다.

(4) 성종 8년(1477)에 표류한 제주인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유구

국 사정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이것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어서 15세기 후반의 유구국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史料가 되고 있다.

(5) 정조 18년(1794)에도 유구인에 대한 조사기록인 問情記가 역시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 견문기록은 주로 八重山島의 풍속에 관한 것이어서 앞의 정보자료보다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八重山島에 대한 본국의 통제를 아는데 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그 생업을 위하여 순간적으로 변하는 바다로 나갔고, 거기서 대자연의 폭력적 현상인 태풍에 휩싸여 유구국에 표착 하는 모험을 해야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유구인 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제주인과 유구인은 이런 「漂流」라는 고난에 찬 행정을 통하여, 그 당시 동아시아를 포괄하는 국제질서인 「事大交隣」이란 조선 대외정책의 실행에 한 고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 유구국에 관한 정보자료를 조선당국에 제공하였으며, 이것이 당시 폐쇄적인 조선국이 그나마 남방 해양의 사정을 아는데 결정적 자료가 되고 있었고, 지금도 역사연구에 귀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 하나 지적하는 것만이라도 바다에서 고단하게 수없이 생사를 걸었고, 그리고 바다와 폭풍의 공포 속으로 사라져간 제주와 유구의 祖靈들에게 한 가닥의 鑢魂哭이 되었으면 하고 본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제주도가 조선국의 극남단에 위치했다는 것은 조선국의 중앙에서 보았을 때 그러한 것이었고, 지정학적 현실적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동아시아의 대륙과 섬들을 이어주는 南太平洋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조선 집정자들에게 별볼일 없는 변방이었다고 생각되었던 제주를 에워싼 「바다」에서 금방 엄청난 기술과 지식으로 武裝된 다른 世界勢力들이 출현하였고, 또한 그들의 방식을 학습한 일본이 조선국 전체를 병합하여, 朝鮮國人을 국제집단난민으로 만들고 있었다. 결국 제주인과 유구인이 배회했던 이 바닷가 변경지대가 아니었고, 이것에 자유롭게 왕래할 자들이 동아시아의 현대사를 정복할 승자가 될 운명이었다. 그러나 당대 역사의 모든 지성과 사고방식이 內陸土地指向的이었고, 모든 것이 정태적인 토지를 둘러싸고 어지럽게 사투를

벌였고, 그 토지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大洋에게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보잘것없이 보였던 제주변방의 바닷가 현실적으로 세계사적 의미를 품고 있었다는 도착적인 현실을 누가 통찰할 수 있었겠는가. 문자조작(文字操作), 즉 과거의 정보·지식 처리를 생업로 삼아서 살아가는 필자에게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굉장하게 보였던 성리학이라는 지배적인 지성이라는 것도 어떤 제한된 時空이 연출하는 안무(按舞)에 불과하며, 대양의 파도에 흔들리면서 생사조차 기약할 수 없었던 그리고 모험에 노출되어 근근히 살아가기에 빠듯했던 그러면서도 권력면에서 全無한 변방 어부들의 뱃 노래소리(일도가: 一棹歌) 보다도 가벼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붓을 놓는다.